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6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정준호·복기왕·박희승

이춘석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박용갑 • 안태준 • 임호선

이연희 • 박해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해당 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철도운영자에게 직접 하도록 하고 있고,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제32조제2항제3호인 '국가의 특수목적사업'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, 왜 그것이 공익서비스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음.

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특별동차운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이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 및 그 가족 그리고 경호처에서 지정하는 요인의 수송사업이라고 설명하나 그 구체적인 운행기록, 관리 규정, 인력 및 비용 산정의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증빙할 수없는 실정임, 이런 상황에서 특별동차에 민간인 탑승 논란이 불거지는

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

비슷한 목적으로 대통령 등이 공무 중 이용하는 항공 및 기타 운송수단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바 철도만 공공기관인 철도공사가 공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이타당한 지에 대한 법리적 근거도 불확실한 상황임. 오히려 철도공사가이를 중단하면 공군이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기와 마찬가지로 국군수송사령부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밀성과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.

이에 법률적 정의도 없고, 예산 사용도 불확실하며,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는 '국가의 특수목적사업'을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사업에서 삭제함으로써 공익서비스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함(안 제32조제2항제3호 삭제).

법률 제 호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 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2조(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)	제32조(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	②		
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			
각호와 같다.		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3.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	<u><삭 제></u>		
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			
되는 비용			